

영등포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2. 2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4호로 2011년 2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불명확한 조례 구문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보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의견제시로 수정(안 제4조의2제5호)

나.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을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항을 추가하여 보완(안 제4조의2제6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표준지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의견제시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맞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완·정비하는 것임.
- 기타 부분은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참 고 자 료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違算),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표준지가가격의 조사·평가)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제37조(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3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현황

부동산평가위원회 명단

2011.1.1기준

연번	직 위	성명	성별	직 업	위촉일	비고
1	위원장	남원준	남	영등포구청 부구청장	당연직	
2	위 원	안동수	남	영등포구청 재무국장	임명직	
3	위 원	송시현	남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2010.6.1	연임
4	위 원	박현기	남	(주)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010.6.1	연임
5	위 원	이희갑	남	세무사이희갑 사무소 대표	2010.6.1	연임
6	위 원	장양순	여	장양순세무회계 사무소 세무사	2010.6.1	연임
7	위 원	유영일	남	영등포세무서 재산세과장	2010.6.1	연임
8	위 원	김권욱	남	(주) 엠와이엔씨 도시본부장	2010.6.1	연임
9	위 원	우시숙	여	솔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2010.6.1	신규
10	위 원	김재희	여	프라임감정평가 법인 이사	2010.6.1	신규
11	위 원	박영진	남	영등포구청 재무과장	임명직	
12	위 원	김 윤	남	영등포구청 세무과장	임명직	
13	위 원	이명균	남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장	임명직	
	간 사	김문배	남	영등포구청 지적과장		

2010년 부동산 평가 위원회 개최 현황

연번	일 시	장 소	대 상	안 건
1	'10.2.2	구청 기획상황실	평가위원 13명 및 감정평가사 4명	2010년도 표준지 조사·평가에 대한 의견청취
2	'10.5.24	구청 기획상황실	평가위원 13명 및 감정평가사 4명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자의 심의
3	'10.7.19	구청 소회의실	평가위원 13명 및 감정평가사 4명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
4	'10.2.2	구청 소회의실	평가위원 13명 및 감정평가사 4명	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심의